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 2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8년 1월 11일
- 다. 상정 및 심사일자 : 제133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8. 1.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 철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및 제2차 동통합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2008년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 골자

- 1) 총 정원 1,305명을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 산정 1,312명으로 7명 순증(안 제2조)
- 2) 각 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함(별표1)
 - 가) 총 정원 1,305명 → 1,312명(7명 증원)
 - 나) 구 본청 894명 → 916명(22명 증원)
 - 다) 보건소 92명 → 92명(순증 없음)
 - 라) 동 289명 → 274명(15명 감원)
 - 마) 구의회사무국 30명 → 30명(순증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의거 우리구의 총정원은 1,312명으로 현행 1,305명보다 7명이 순수증원됨으로써 구의회사무국 정원 30명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275명에서 1,282명(구 본청 916명, 보건소 92명, 동 274명)으로 조정되고, 20개 동에서 16개 동으로 통·폐합된 동의 정원은 현행 289명에서 274명으로 15명이 감소되나 동주민센터의 평균 근무인원은 현행 14.5명에서 17.1명으로 근무인력은 다소 증원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이 통·폐합되어 16개동으로 축소됨에 따라 발생될 잉여인력 15명과 2008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된 순수증원된 인원 7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